

中國의 電子簽名法에 대한 考察

黃鉦源* · 朴文進**

A Study on the Electronic Signatures Law in China

Jung-Won Hwang · Moon-Jin Park

論文摘要

作爲中國電子商務立法領域首部法律-電子簽名法于2005年4月1日正式實施。該法主要參考了UNCITRAL的電子商務示範法和電子簽名示範法并結合中國的實際情況，不僅規定了電子簽名 認證服務的內容而且還規定了數據電文的法律效力等，因此具有電子商務法的性質。本論文主要考察了中國電子簽名法的制定經緯，特徵以及主要內容后，在結論中提出了一些建議。

關鍵詞：中國，電子商務，電子簽名，數據電文，認證機關，電子認證服務

1. 序 說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이용의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문서 교환의 안정성·신뢰성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쟁점을 논의해오고, 1996년과 2001년에는 UNCITRAL¹⁾에 의해서 전자상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법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1)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세계무역거래관련 법률을 통일함으로써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1966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창설된 기구이다.

Commerce)²⁾과 전자서명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³⁾이 각각 제정되었다.

이러한 입법과 더불어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대책 마련과 관련 국내법규의 정립에 적극 나섰으며, 미국은 이미 95년 유타주 등 40여개 주에서 전자서명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독일(1997년), 이탈리아(1998년), 말레이시아(1997년), 싱가포르(1998년), 일본(2000년), 대만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한국은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과 함께 “전자서명법”을 제정, 동년 7월부터 시행하여왔다.⁴⁾

중국은 주요하게 UNCITRAL의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과 2001년 전자서명모델법을 참작하고, 자체실정에 입각하여 전자서명법[電子簽名法]⁵⁾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8월 10기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동 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2005년 1월 28일 전자인증서서비스관리에 관한 법인 “전자인증복무관리판법[電子認證服務管理辦法]”이 信息產業部⁶⁾ 제1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3월 18일 전자인증서서비스비밀번호에 관한 법인 “전자인증복무밀마관리판법[電子認證服務密碼管理辦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의 제정경위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자서명법에 대하여 제정경위, 특징 및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동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 UNCITRAL 電子商去來모델법과 電子書名모델법

2.1.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2.1.1. 제정경위

1985년 제18차 UNCITRAL 회의에서 사무국이 작성한 “자동문서처리의 법적 측면(Legal aspect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이라는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컴

2) 1996년 6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CITRAL 제29차 회의에서 최종 채택되고, 동해 12월 16일 제85차 유엔정기총회에서 의결된다.

3) 2001년 7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34차 회의에서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이 최종 채택되었다.

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아시아각국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 분석』, 2002.12, p.3.

5) 중국법률용어에서 전자서명(電子書名)을 전자첨명(電子簽名)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음 사용되는 중국 법률용어는[]로 표시한다. 中國簽名法 全文에 대한 해석본은 부록을 참조할 것.

6) 중국의 信息產業部(신식산업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갖고 있다.

퓨터기록의 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권고안”을 채택되었다. 이 권고안의 채택을 계기로 UNCITRAL내에 “EDI 및 관련 통신수단의 법적 측면에 관한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and Related Means of Communication)”의 작성을 위한 작업반이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5년 제28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작업반 회의에서 모델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 후 1996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9차 위원회 회의에서 EDI 모델법 초안을 심의한 끝에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이 최종 채택되었고 12월 16일 제85차 유엔정기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⁷⁾

이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형식 정보자료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의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서류(Original Writing)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할수 있는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법에서는 총칙과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법적요건(법적 승인, 문서성, 서명, 원본, 증거능력, 보존 등)의 적용, 데이터메시지의 교환, 물품운송계약에의 적용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거래형태에 적용가능성도 고려하였다.⁸⁾

2.1.2 특징

첫째, 비록 법조문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모델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모델법은 각국이 국내입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국이 법의 적용을 국제거래로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식⁹⁾을 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의미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게 마련이므로, 국제거래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걸림돌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모델법은 상거래에 적용된다. 소비자 거래 및 공적거래(예를 들면 통관절차)는 제외되었다. 회의과정에서 공적거래도 포함 즉, 통관절차와 같은 공적거래를 상거래와 구별하는 것은 실용적인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한편 소비

7) 모델법의 명칭이 처음의 “EDI모델법”에서 “EC모델법”으로 변경된 이유는 EDI라는 표현은 자동화된 컴퓨터통신을 기초로 한 너무 기술적인 개념이어서 EDI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포괄적인 상거래를 포함하는 표현으로써 전자상거래(EC)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5, p.346.).

8) 윤광윤 외,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삼영사, 2000, p.61.

9)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2조 제1항 : 본법은 제2조 1항(데이터메시지의 정의조항)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에 대하여 그것이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자거래에 관하여서는 본 모델법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본 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법규범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는 각주를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거래를 일률적으로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피하였다.

2.2.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2.2.1 제정경위

UNCITRAL는 1996년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한 이후에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전자서명법제의 통일을 위하여 전자서명 통일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계속하여 연구검토를 진행하여 오다가 2000년 9월 29일 전자서명모델법안을 채택하였다. 이 모델법안은 2001년 7월 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34차 위원회에서 최종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으로 채택되었다.

회의과정에서 전자서명모델법을 전자상거래모델법 제3부로 편입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나, 전자상거래모델법이 이미 성공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채택되었고 또한 많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모델법을 전자상거래모델법에 통합하지 않고 이를 독립적인 법률로 채택하게 되었다.¹¹⁾

2.2.2 특징

첫째, 입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서명요건)¹²⁾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단순히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해설을 붙인 법률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모델법으로 채택된 것이다.

둘째, 기술적 규정과 약정에 의하여 보완되는 기본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서명 모델법은 전자서명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원칙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며, 전자서명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국에서는 전자서명모델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절차상의 세부사항을 보완할 수 있고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협정으로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다.

10) 정완용, 전거서, p.348.

11) (2005. 11. 30. 방문).

12)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 :

1. 적용법이 어떤 사람의 서명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데이터 메시지에 의하여서도 충족될 수 있다.

(1) 특정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데이터메시지에 포함된 자료의 내용을 특정인이 승인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방법인 경우

(2) 그러한 방법은 관련된 약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의 면에서 데이터 메시지의 생성笑戮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2. 위의 규정은 그러한 법규정이 의무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거나, 단순히 서명이 없는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셋째,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에 대한 추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에서 전자서명이 수기서명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명요건에 추가하여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객관적 기술상의 신뢰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³⁾

넷째, 관련당사자를 위한 기본행위 규칙을 마련하였다. 전자서명모델법은 서명인, 신뢰당사자,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행위규칙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서명자와 관련하여서는 서명인이 전자서명장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서명자는 해당 서명장치의 불법적인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 것이 기대된다. 또한 서명자가 서명장치가 훼손되었음을 알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뢰자 혹은 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 서명자는 인증서와 관련하여 서명자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뢰자와 관련하여서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 전자서명이 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신뢰하는 자는 인증서의 유효성, 중지 및 폐지를 입증하고 인증서와 관련된 어떠한 제한도 준수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의무는 신뢰할만한 시스템, 절차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공급자가 정책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표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증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⁵⁾

3. 中國의 電子簽名法의 制定經緯와 特徵

3.1. 制定경위

중국의 전자상거래 입법추진에 있어서 초석역할을 한 법은 1999년 3월에 제정된 새로운 계약법이다. 동 법의 총 129개 조항에서 6개 조항⁶⁾이 전자문서에 관해 규정하는 등 최

13)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6조 :

1. 데이터메시지에 적용되는 법(이하 적용법)이 서면형태로 되어있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러한 법규정은 만약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이후의 증명에 사용될수 있도록 입수가가능하다면 데이터 메시지에 의해서도 충족될수 있다.
2. 1항은 적용법이 서면자료의 제출요건을 의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단순히 서면상태로 존재하지 않는정보의 결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4) 전자상거래모델법 제8-11조 참조.

15) 정완용. 전게서, p.348.

초로 팩스와 전자메일 등을 포함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당시 세계범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부응하고, 1996년 제정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¹⁷⁾

그 후 2000년 3월 9기 전인대 회의에서 상하이 대표단이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법”입법을 공식 제안하였고, 구체적인 입법 추진은 2001년에 새로 구성된 國務院信息化工作辦公室¹⁸⁾에서 담당하였다. 주요하게 UNCITRAL의 1996년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2001년 전자서명 모델법을 참작하여 1년간의 작업을 거쳐 2002년 행정법규형태의 “中國電子簽名條例”초안을 완성하였는 바, 이는 당시 업계의 절실한 요구와 입법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먼저 행정법규형태로 2~3년간 시행하다가 다시 법률로 승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¹⁹⁾

그러나 초안의 심사과정에서 國務院法制辦公室²⁰⁾은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안의 형태를 행정법규에서 법률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전자서명의 주요용어, 적용범위 등에 대해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 뒤 동 ‘中國電子簽名法’草案은 2004년 3월 국무원상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3차례의 상정 審議를 거쳐 8월 28일 최종 통과되었다.

3.2. 특징

중국 전자서명법의 특징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별도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 및 인증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문서의 형식, 보존, 송수신, 법적 효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¹⁾

둘째, 적용범위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였다. 즉 민사활동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을 확립하고, 관련당사자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행정기관의 전자행정은 별도로 제정하는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6) 중국계약법 제11조에 의하면, 서면 형식이라 함은 계약서, 서신, 전자문서(전보, 전송, 팩스, 전자데이터 교환과 전자우편을 포함) 등 유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함. 그의 제16조, 26조, 34조, 24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17) 본 모델법은 모든 국가들이 서류에 기초한 통신문형식의 정보자료 보관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총칙과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법적요건의 적용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거래형태에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18) 국무원 소속의 국가정보화추진전담기관으로 97년에 최초로 구성되었다.

19) 呂海蘭, “電子簽名法解讀”, 『網絡法律評論』, 2005년2월號, p.36.

20) 국무원 행정법규의 제정을 담당하는 국무원 직속 법제기관이다.

21) 미국, 유럽, 한국 등은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각각 제정하고 있다.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적용범위 규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셋째, 기술의 중립원칙을 도입하였다. 즉 향후의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현재의 모 특정 정보통신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자서명 명칭²²⁾을 사용하는 등 더욱 광범위한 법률시각에서 기술문제를 다루었다. 즉 과도한 기술화와 복잡한 규정은 법률시행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²³⁾

넷째, 정부행정 간섭의 최소화원칙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 지정대상을 기업법인에 한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

4. 中國의 電子簽名法의 構造와 主要內容

중국 전자서명법은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내용은 총칙, 데이터 메시지, 전자서명과 인증,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전자서명법의 구성

구 분	내 용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데이터 메시지
제 3 장	전자서명과 인증
제 4 장	법률책임
제 5 장	부 칙

4.1. 목적과 적용범위

4.1.1 목적

중국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행위를 규범화하고 전자서명의 법률효력을 확립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²⁵⁾ 즉 본 법의 목적은 데이터메시지와 전자서명의 법적 개념 정의 및 효력을 확립하고, 데이터메시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22)법의 명칭에 있어서 디지털서명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23) 呂海蘭, 前揭論文, p.42.

24) 吳偉光, 『電子商務法』, 清華大學出版社, 2004.7, p.45.

25) 중국전자서명법 제1조.

4.1.2 적용범위

중국 전자서명법은 민사활동²⁶⁾에서의 계약서 혹은 기타서류, 증빙서류 등에 있어서 당사자는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음을 약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의 사용을 약정한 경우 단순히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의 형태 때문에 그의 법률효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의 상업적 (commercial) 활동관계²⁷⁾에 대한 적용범위와 당사자 자치원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현실에 입각하여 적용제의 대상으로 첫째, 혼인, 입양, 승계 등 신원관계 둘째, 토지, 가옥 등 부동산권익의 양도 셋째, 물, 열, 가스, 전기공급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중지관련사항 넷째,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데이터메시지의 사용을 배제한 경우 등을 두고 있다.²⁸⁾

그 외에 국무원 혹은 국무원규정에 의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전자행정과 기타 사회활동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²⁹⁾하고 있는데, 이는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의 공적거래 제외규정의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4.2. 데이터 메시지[數據電文]

4.2.1 데이터 메시지의 개념

중국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 데이터 메시지라 함은 전자, 광학, 자기 혹은 유사 수단으로 생성, 송신, 수신 혹은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보다 범위가 다소 축소되었다.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은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이라 함은 전자문서교환(EDI), 전자우편, 전신, 텔렉스 또는 팩스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광학적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생성, 전송, 수신 혹은 저장되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어,

26) 중국은 “民商合一” 법체제로 민사활동에 상업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27)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는 계약관계 혹은 비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업적 성격의 관계는 다음 거래를 포함하며 또 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무역거래; 배급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당사대표 또는 당사대리; 팩토링(factoring); 리스(leasing); 공장건설(construction of works); 컨설팅(consulting); 엔지니어링(engineering); 라이선스(licensing); 투자; 파이낸스(financing); 은행; 보험; 개발계약(exploitation agreement) 혹은 양허(concession);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타 형태의 공업 또는 상업협력; 항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를 이용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계약 등을 포함한다(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각주 참조).

28) 중국전자서명법 제3조.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팩스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4.2.2 문서성[書面形式]과 원본성[原件形式] 및 증거력

중국 전자서명법은 데이터 메시지의 문서성, 원본성 및 증거력의 규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기재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할 수 데이터메시지는 법률과 법규요구에 부합되는 문서로 간주하며, 원본형식의 충족요건으로는 첫째, 기재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 가능한 경우 둘째, 메시지의 최종 형성시점부터 내용의 완전성, 미변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 다만 배서 및 데이터교환, 저장 및 현출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적인 변화는 데이터 메시지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⁰⁾

또한 데이터 메시지가 전자, 광학, 자기 혹은 유사수단으로 생성, 송신, 수신 혹은 저장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로의 사용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서 그 진실성의 심사요건으로는 첫째, 데이터 메시지의 생성, 저장 혹은 전송방법의 확실성 둘째, 내용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의 확실성 셋째, 작성자를 구분하는 방법의 확실성 넷째, 기타 관련요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¹⁾

4.2.3 데이터 메시지의 보존(保存)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문서보존의 충족요건으로 첫째, 기재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가능한 경우 둘째, 데이터 메시지 형태[格式]가 생성, 송신 혹은 수신시의 형태와 동일 혹은 형태가 다르나 기존의 생성, 송신 혹은 수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셋째,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 수신인 및 송신, 수신시간을 식별(識別)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³²⁾

여기에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의 차이³³⁾은 데이터 메시지의 송신지와 수신지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송신인과 수신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4.2.4.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국 전자서명법 제9조에서 데이터 메시지가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첫째, 작성자로부터 수권 받아 송신한 경우 둘째, 작성자의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송신한 경우 셋째, 수신인이 작성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메시지를 검증하여 확인할 수 있

29) 중국전자서명법 제35조.

30) 중국전자서명법 제4, 5조.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8조.

31) 중국전자서명법 제7, 8조.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9조.

32) 중국전자서명법 제6조.

33)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7조 1항 에서는 데이터 메시지가 송수신의 날짜와 시간, 송신지와 수신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서명 생성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서명 생성데이터가 이미 유출 혹은 이미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관련 각방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서명 생성데이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⁴²⁾

4.4. 전자인증서비스

4.4.1 전자인증서비스기관의 자격요건

전자서명이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으로 첫째,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의 보유 둘째, 전자인증서비스제공에 필요로 하는 자금과 경영장소의 보유 셋째, 국가안전표준에 부합되는 기술과 설비의 보유 넷째, 국가비밀번호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비밀번호사용 허가 증명서류의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인증기관의 지정대상을 기업법인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⁴⁾

4.4.2 전자인증서비스기관의 허가절차

전자인증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동법 제17 조에 나열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⁴⁵⁾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신청접수 후 법에 따라 심사하고 국무원상무주관기관⁴⁶⁾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전자인증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인증허가증을 획득한 신청인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⁴⁷⁾에서 기업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하고,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명칭, 허가증번호 등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⁴⁸⁾

42) 중국전자서명법 제14, 15조.

43)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중국전자인증서비스관리방법 제5조에서 규정 즉 첫째, 독립적인 기업법인 둘째, 전문기술, 운영관리, 안전관리인원 및 기타 서비스인원 30인 이상 셋째, 등록자본 3000만 위안 이상 넷째, 고정적인 영업장소와 전자인증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다섯째, 국가안전표준에 부합되는 기술과 설비 여섯째, 국가비밀번호관리기관의 비밀번호 사용허가 증명서류의 보유 등이며, 인증기관의 영업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44) 한국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 시행령에서는 지정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한편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45)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신식산업부(信息産業部)를 가리킨다.

46) 국무원상무주관기관은 상무부(商務部)를 가리킨다.

47)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와 지방각급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을 가리킨다.

48) 중국전자서명법 제18조.

4.4.3 전자인증업무규칙의 제정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국가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전자인증업무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전자인증업무규칙에는 책임범위, 운영규범, 정보안전보장조치 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⁴⁹⁾

4.4.4 전자서명인증서의 신청과 발급

전자서명인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진실, 완벽,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의 신분에 대해 심사확인하고 제출한 관련서류를 심사한다.

인증서에 포함될 사항으로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인증서소유자의 이름, 인증서의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소유자의 전자서명검증데이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전자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⁵⁰⁾

4.4.5 전자인증서비스기관의 의무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서명인증서 내용이 유효기간 이내에 완전하고 정확함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자서명 신뢰측이 확인 혹은 전자서명인증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⁵¹⁾

또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잠정중지 혹은 종료일 90 일전에 업무접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각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잠정중지 혹은 종료일 60 일전에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기타 전자인증서비스기관과 업무접수에 대해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업무접수관련 기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와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신청하여 기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업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⁵²⁾

한편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법에 의해 전자인증허가증을 정지당한 경우 그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은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인증관련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정보보관기간은 최소 전자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까지로 한다.⁵³⁾

49) 중국전자서명법 제19조.

50) 여기에서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증업무와 관련 공인인증기관의 책임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p.147).

51) 중국전자서명법 제22조.

52) 한국은 인증업무를 휴지할 경우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 폐지할 경우 폐지할 경우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한편 휴지의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한국정보보조진흥원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전자서명법 제10조).

4.4.6 전자인증서비스기관에 대한 감독관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동법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업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⁵⁴⁾

4.4.7 외국 전자서명인증서에 대한 승인

지역제한을 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 그리고 각국이 서로 다른 인증기관 및 인증서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 전자서명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서 관련협정 혹은 대등원칙(對等原則)에 따라 심사 허가한 해외(외국)의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해외에서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는 이 법에 의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4.5. 법률책임

4.5.1 전자서명인의 책임

전자서명인이 전자서명 생성데이터의 이미 유출 혹은 이미 유출 가능성을 인지하였으나 각 관련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 생성데이터 사용을 종료한 경우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진실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 과오로 전자서명 신뢰자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⁵⁶⁾

4.5.2 전자인증서비스기관의 책임

전자서명인 혹은 전자서명 신뢰자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전자인증서비스에 따라 민사활동을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⁵⁷⁾

53) 한국은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전자서명법 제22조).

54) 중국전자서명법 제25조.

55)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제12조 2항 : 입법국 밖에서 발행된 인증서도 실질적으로 동등이상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법국에서 당해국가에서 발행된 인증서와 동등한 법률효과를 가진다.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제12조 5항 :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특정한 종류의 전자서명 혹은 인증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약정은 국외승인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약정이 적용 가능한 법에 의할 때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6) 중국전자서명법 제27조.

57) 전자인증서비스기관에 대한 책임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인증서비스기관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허가없이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정중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그 60일전에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직접 주관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업무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관련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정보주관기관은 기한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자인증허가증을 철회하고 직접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10년기간 전자인증서비스의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전자인증허가증을 철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⁵⁸⁾

4.5.3 전자인증서비스업 감독관리기관의 책임

이법에 의한 전자인증서비스업 감독관리기관의 근무인원이 법에 따라 행정 허가, 감독관리 책임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⁵⁹⁾

4.5.4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 도용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⁶⁰⁾

5. 結 語

3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제정된 동 전자서명법은 전자상거래 입법에서 최초로 되는 법률로서 단순히 전자서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규정하는 등 전자

있는데, 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전자상거래안전을 위한 전문 서비스기관으로 이들 행위가 교역 쌍방의 이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기술 및 교역과정 통제에서도 3자중 가장 유리한 지위임을 고려한 것이고 둘째,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한 시장을 강력하게 규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서명법이 공포될 때 중국은 이미 네티즌 9천만명(그중 온라인교역자 2천만), 70여개 인증서비스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책임제한규정이 없어 인증서비스기관은 계약중의 책임제한약관으로 서명인과 의뢰 측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田鳳常, “電子簽名與認證機關的法律責任”, <http://www.shoeses.com/swfu/xdzswnr.asp?id=220>, 2005.11.27. 방문).

58) 중국전자서명법 제31조.

59) 중국전자서명법 제33조.

60) 중국전자서명법 제32조.

데이터메시지라 함은 전자, 광학, 자기 혹은 유사수단으로 생성, 송신, 수신 혹은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민사활동에서의 계약서 혹은 기타서류, 증빙서류 등에 있어서 당사자는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의 사용 혹은 사용하지 않음을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의 사용을 약정한 경우 단순히 전자서명,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 때문에 그의 법률효력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前項 규정은 다음 문서에 적용하지 않는다.

1. 혼인, 입양, 승계 등 신원관계
2. 토지, 가옥 등 부동산권익의 양도
3. 물, 열, 가스, 전기공급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중지관련사항
4.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전자문서 사용을 배제한 경우

제2장 데이터 메시지

제4조 기재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할 수 데이터메시지는 법률과 법규요구에 부합되는 서면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5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데이터메시지는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원본형식을 충족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1. 기재내용을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메시지의 최종형성시점부터 내용의 완전성, 미변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이다. 다만 배서 및 데이터교환, 저장 및 표시과정에서 발생한 형식적인 변화는 데이터메시지의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데이터메시지는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한 문서보존요구를 충족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1. 기재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수시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데이터메시지의 형태가 생성, 송신 혹은 수신시의 형태와 동일 혹은 형태가 다르나 정확하게 기존의 생성, 송신 혹은 수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3. 데이터메시지의 작성자, 수신인 및 송신, 수신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데이터메시지가 전자, 광학, 자기 혹은 유사수단으로 생성, 송신, 수신 혹은 저장되었다는 이유로 증거로의 사용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데이터메시지를 증거로 활용하는데 그 진실성의 심사에 있어 다음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데이터메시지의 생성, 저장 혹은 전송방법의 확실성

2. 내용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법의 확실성
3. 작성자를 구분하는 방법의 확실성
4. 기타 관련요인

제9조 데이터메시지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작성자로부터 수권 받아 송신한 경우
2. 작성자의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송신한 경우
3. 수신인이 작성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메시지에 대해 검증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항 규정사항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10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데이터메시지의 수신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신 확인하여야 한다. 작성자가 수신인의 수신확인을 접수하는 시점에서 데이터메시지를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데이터메시지가 작성자가 공제하지 않은 임의의 정보시스템에 진입한 시간을 문서의 송신시간으로 간주한다.

수신인이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그 특정시스템에 진입하는 시간을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시점으로 간주하며, 특정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수신인의 임의의 시스템에 처음 진입하는 시간을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시점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데이터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시간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12조 작성자의 주요 영업소를 데이터메시지의 송신장소로 하고 수신인의 주요 영업소를 데이터메시지의 수신장소로 한다. 주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경상주거지를 송신 혹은 수신장소로 한다.

당사자가 데이터메시지의 송신 및 수신장소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3장 전자서명과 인증

제13조 전자서명이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신뢰하는 전자서명으로 간주한다.

1.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생성 데이터가 전자서명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2. 서명당시 전자서명인이 전자서명 생성 데이터를 공제하고 있을 것
3. 서명한 후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임의의 변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
4. 서명한 후 당해 데이터메시지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임의의 변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신뢰하는 전자서명을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신뢰하는 전자서명은 서명 혹은 인감낙인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전자서명인은 전자서명 생성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서명인은 전자서명 생성 데이터가 이미 유출 혹은 이미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관련 각방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전자서명 생성데이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서명이 제3자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설립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전자인증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원과 관리인력을 보유할 것
2. 전자인증서비스제공에 필요로 하는 자금과 경영장소를 보유할 것
3. 국가안전표준에 부합되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할 것
4. 국가비밀번호관리기관에서 발급한 비밀번호사용 허가증명서류를 보유할 것
5.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제18조 전자인증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동법 제17조에 나열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신청 접수 후 법에 따라 심사하고 국무원상무주관기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전자인증허가증을 발급하고,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인증허가증을 획득한 신청인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업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인증자격을 획득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명칭, 허가증번호 등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제19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는 전자인증업무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이를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인증업무규칙에는 책임범위, 운영규범, 정보안전보장조치 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전자서명인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신청하는 경우 진실, 완벽,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서명인증서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자의 신분에 대해 검사확인하고 제출한 관련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는 정확하고,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명칭

2. 인증서소유자의 이름
3. 인증서의 일련번호
4. 인증서의 유효기간
5. 인증서소유자의 전자서명검증데이터
6.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의 전자서명
7.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서 규정한 기타내용

제22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서명인증서 내용이 유효기간 이내에 완전하고 정확함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자서명 신뢰측이 확인 혹은 전자서명인증서의 기재내용 및 기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잠정중지 혹은 종료일 90일전에 업무접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각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잠정중지 혹은 종료일 60일전에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기타 전자인증서비스기관과 업무접수에 대해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업무접수관련 기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와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신청하여 기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업무를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법에 의해 전자인증허가증을 정지당한 경우 그 업무이관에 대한 사항은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인증관련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정보보관기간은 최소 전자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까지로 한다.

제25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동법에 따라 전자인증서비스업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제26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이 관련협약서 혹은 대등원칙에 따라 심사허가한 후 중국경외(외국)의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경외에서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는 이 법에 의한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서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전자서명인이 전자서명 생성데이터의 이미 유출 혹은 이미 유출 가능성을 인지 하였으나 각 관련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 생성데이터 사용을 종료한 경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에게 진실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타 과오로 전자서명 신뢰자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

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

제28조 전자서명인 혹은 전자서명 신뢰자가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전자인증 서비스에 따라 민사활동을 하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제29조 허가 없이 전자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30만 위안 이하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는 전자인증서비스를 잠정중지 혹은 종료하는 경우 그 60일전에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정보산업주관기관은 직접 주관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전자인증서비스제공자가 인증업무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인증관련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거나 혹은 기타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국무원정보주관기관은 기한내 시정할 것을 명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자인증허가증을 철회하고 직접 주관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10년기간 전자인증서비스의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전자인증허가증을 철회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 도용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3조 이법에 의한 전자인증서비스업 감독관리기관의 근무인원이 법에 따라 행정허가, 감독관리책임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4조 이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본인 혹은 타인을 대리하고 대리인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자서명신뢰인"이라 함은 전자서명인증증서 혹은 전자서명을 신뢰하여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서명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자와 전자서명생성정보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메시지 혹은 전자기혹을 말한다.
4. "전자서명생성데이터"라 함은 전자서명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자가 밀접하게 연계되게 하는 부호, 번호 등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데이터"라 함은 전자서명을 입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암호, 계산방법 혹은 공개키 등을 포함한다.

제35조 공무원 혹은 공무원규정에 의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정무(政務)활동과 기타 사회활동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6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